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한정애·고영인·강병원

김영진 · 김경만 · 김민석

허종식 · 이용우 · 김영주

박성준 · 권칠승 · 황운하

신정훈 · 강선우 · 김성주

유미향 · 장철민 · 김상희

윤후덕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)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 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 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(49만명)의 15.3%(7.4만명)에 불과함.

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

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 는 것임(안 제95조의2). 법률 제 호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의 제목 "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"를 "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(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)
- 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(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제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) 「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법」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----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 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 업의 근로자로 본다. 다만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삭제>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 설>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 4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 업주(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는 제외한다) 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 <신 설> 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(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)